

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(안)

의안 번호	4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2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정사유

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 출연금, 군 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등으로 조성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

나. 노인복지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%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

다. 기금의 용도는 노인문제상담소 운영,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함(안 제5조)

라.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고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집의에 답변하도록 함(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)

마.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133조

나.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

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(안)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금의 설치)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노인복지기금 (이하"기금"이라)을 설치한다.

제 3 조 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.

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고성군 출연금
2. 군 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
3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

③고성군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 4 조 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고성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가 운용관리 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.

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에치하여 관리한다.

③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%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.

제 5 조 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.

1. 충효,예절 등 전통문화선양
2. 고성군 노인회보 발간
3.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
4.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
5. 노인문제상담소 운영
6.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

- 7.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지원
- 8.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
- 9.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
제 6 조 (회계관계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- 1. 기 금 운 용 관 : 고성군경리관
- 2. 기금분임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
- 3. 기금출납공무원 : 여성복지계장

②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(별지 제1호서식)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결산 및 보고) ①기금분임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기금분임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 9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